

A Study on Open of Information Data and Privacy Rights

Taek Kim*

Abstract

All citizens will not be infringed communications rub. That can be seen to have the privacy freedom.lot (Internet of things) have released a security system in the era of information privacy appear that public safety and threat. Current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can be use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search and seizure confirmed the fact communication of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information storage medium for the common purpose of providing material system, the system provides data and communications.

This paper focused on Privacy and open of information data by the Prosecutor and Police in korea. Privacy rights include that transparency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rotections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be lawfulness of processing, individuals consent while Prosecutors investigations. especially we need explicit condition and National agency need to obtain in order to legitimize their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Privacy rights information' necessity and problem, second, to understand Privacy rights and limits , thir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purpose of Transparency, codes of conduct and Democracy of information.

- ▶ Keyword : Privacy rights, transparency information, communication, protections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investigation

I. Introduction

1. Goals

프라이버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아 영역의 불가침성'과 법률적 측면에서 '인격 존중을 위해 필요한 이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프라이버시는 'right to be alone'이라는 개념을 지녔고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통과정에서 정보 주체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의미를 가진다[1].

lot(Internet of things)시대에 있어 정보의 공개와 보안시

스템은 공공안전위협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lot기기의 70%가 패스워드 보안, 수신, 암호화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보안 분석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lot 시대에는 보안 및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물론 자동차, 의료, 공공기반 등 많은 분야에서의 취약한 보안이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데이터 이동에 따른 보안과 관련한 문제해결이 관심사라고 한다. lot보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격 행위에는 서버와 단말에 대한 불법 액세스를 통한 정

• First Author: Taek Kim, Corresponding Author: Taek Kim

*Taek Kim (lasecurity@naver.com),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Jung Won University

• Received: 2016. 10. 05, Revised: 2016. 10. 25, Accepted: 2016. 11. 28.

보를 조작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기밀을 공격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대표적이라고 본다[3]. 또한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기 활용이 많아지면서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통신제한조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제도, 통신자료 제공제도 등이 있다[4].

전기통신사업법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와 같은 법적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 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5].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안전보장같은 예외적인 사항만 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가능한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통신수사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의 통신수사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서로 상충되고 있어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6].

Table 1. Information data

11year	12year	13year	14year	15year
65185	820800	944927	1001013	560027

source:shim woo min(2016)

위 Table 1에서 보듯이 2011년에 6만5천여 건인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14년에는 10만 건이 넘었다. 또한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56만 건이 넘어서는 등 통신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자료 수집건수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사생활보호가 침해될 수 있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공개와 수집제한의 원칙 간에 존재하는 갈등과 경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방이 미흡한 현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7].

본 연구에서는 정보수집이나 정보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통신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보공개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쟁점분석을 제시한다. 셋째, 정보수집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고찰한다.

2.Methods

본 연구는 정보수집 정보 통신수사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한다. 통신수사에 관한 전문가와 실무자를 면접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이번 연구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

찰한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인 통신 수사균형 보고서 분석하고 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결정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3.Related Works

이원상(2015))의 “프라이버시와 범죄통제의 균형을 위한 통신수사 법체계”는 통신수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는지와 상충점을 비교하여 균형점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심우민(2015)은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입법에서 사물인터넷 활용이 이용자 개인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보안을 넘어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3자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활용으로 인한 개인식별 기능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김경환(2015)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침해용인을 평가 하였다. 장국현(2006)은 프라이버시문제와 개인정보침해를 구별하였다. 개인정보수집 목적에 따른 소비자의 개인정보 공개 태도변화를 강조하였다. 김호원(2015)의 사물인터넷상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분석하였다. 장국현(2006)은 프라이버시는 헌법이나 법에 반영된 정치적 성명서와 같은 문서를 만드는데 반영되는 사회적 가치라고 보면서 프라이버시의 행동적 실체는 윤리적 권리, 정치적 성명서와 법과 구분되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윤식(2013)은 프라이버시권이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자기정보의 수집 권리 보존 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

인 정보공개 태도변화를 강조하였다. 김호원(2015)의 사물인터넷상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분석하였다.

II. Preliminaries

오늘날 행정의 정보화가 좀 더 고도화되고 통신망 및 뉴미디어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나 양과 그 범위가 산술적 판단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개인에 의해 침해정도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하고 은닉성의 강약을 일단 배제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제어적인 성격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해야 한다[8].

1.Necess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불안이

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은행계좌를 추척한다든지, 전자 우편, 전화 통화 내역조회, 문자 등을 침해한다[9].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법률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이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통신자료와 같은 규정은 그 성격상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와 함께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법률 규정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적 정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관련 규정들을 한 규정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10].

2. Principles of Proportion

프라이버시와 범죄통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원칙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 메커니즘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례성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비례성원칙은 다른 측면으로 통신수사가 수행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앞서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통신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그 판단여부를 비례성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비례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은 원칙과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법 영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실과 규범문제를 최적화 시키는 ‘최적화 명령(Optimalisierungsgebot)’을 수행하게 된다. 10 비례성의원칙은 독일의 경찰법에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여 헌법적인 원칙으로 승인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사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제한, 즉, “제한에 대한 제한(Schrankenschränke)”의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11]. 그에 따라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07조 제2항이 비례성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2].

3. Principles of legal suitability

OECD 이사회는 1980년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사용범위가 부합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항상 갱신해야 한다. 정보 그 자체는 이미 이용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시사성이 결여되어 정보주체에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13]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수단의 유용성(Tauglichkeit)을 그 판단 기준

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법률을 공포하는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 당시의 모든 인식 가능한 수단이 고려되었다면 유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적합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적합한 수단인지를 검토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원칙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인지도 동의를 필요하다

III. The Problems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앱, 클라우드 등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신기술들 모두 개인정보보호의 위협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기술로 인해 개인정보가 쉽게 외부에 유출되고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15].

2014년 HP는 TV웹캠 온도측정기 스프링클러 도어락 등 주요 제조사의 LOT 디바이스 10종에 대한 보안위협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각 LOT디바이스별로 평균 25건(총250건)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됐고 주요 취약점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부적절한 접근권한 설정, 전송구간 암호화 미적용, 웹인터페이스의 보안 미적용,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 등이 나타났다. 특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프라이버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디바이스는 전체의 약 90%로 조사됐다.

해당 디바이스들은 주소, 생년월일, 건강정보, 카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전송하거나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디바이스의 80%는 취약한 사용자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어 비인가 접근을 통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 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table2)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Table 2. For Investigation Control

corporation	classification	divide	2012년		2013년		2014년		remark
			first half of the year	second	first	second	first half of the year	second	
naver	warrant	ask warrant	142	1,345	4,283	4,961	4,998	4,344	non notification by orders
		treat	125	1,153	3,756	4,291	4,405	3,783	
		support	1,753	167,916	41,304	178,053	58,768	17,611	
	identification	fact demand	3,894	3,947	3,740	2,831	2,560	2,230	
		treat	3,894	3,536	3,231	2,309	2,162	1,840	
		support	18,206	16,848	12,440	7,060	4,634	3,823	
	restriction action	call inspection	13	17	31	41	39	17	
		treat	13	17	31	41	39	17	
		support	51	58	111	84	131	62	
	information data	demand information	-	-	-	-	178	107	information data suspending after 10.18.2012
		treat	10,080	6,469	0	0	0	0	
		support	42,499	25,685	0	0	0	0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17].

-2012년, 2013년 통신자료 수처 확인 불가능 통신 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자료의 경우 1년 동안인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2012년도까지의 통신제한조치 처리 통계는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일괄 1건으로 집계함<통신수사 관 FUS 통계, source: lee won sang, prime prosecutors office,2015

현재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시민단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18].

미국의 IT기업과 시민권 옹호 단체들의 연합체는 지난 7월 18일 국가안보 관련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요구

하는 서한을 미국정부에 전달했는데 이 서한에는 오바마 정부와 미국의회에 대해 정부당국이 해외정보감시법에 의거해서 인터넷 기업과 통신 기업에 요구한 정보공개 요청건수, 국가안보 서한 등에 대한 요청 건수, 감시 대상 개정 및 개인장치의 수 등에 상세히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정부 스스로 감시활동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촉구하였다.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는 정부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데이터 공표권한을 미국해외정보 감시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이처럼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정부에 적극 호소하는 것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국가안전보장국의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인 프리즘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장관은 국가안전보장국이 실시하고 있는 통신 일부의 메타 데이터의 수집이며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테러방지를 주목적으로 법원의 감독 하에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처럼 미국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법원을 통한 법적기간 갱신을 승인하고 있다고 보았다[19].

V. The Proposed Policy

1. Institutional approach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원칙적으로 반한다.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을 감시하는 행위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 오늘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형식적 차원에서 다소 엄격한 규제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실제 현

실은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 또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21].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법만을 사용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 정보수집단계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없는 정보도 다양한 빅데이터 처리기법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정제된 정보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고급정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호기법이 필요하다[22]. 개인정보 및 수집활용은 인터넷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데 통신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23].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및 통신수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수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수사기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수사기법을 제시해야 한다.

2. Technical Control

정보수집 시 정보를 동의 받고 동의 받은 정보도 민감한 정보일 경우에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유출방지거나 방화벽 등 다양한 보안기법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악의적인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사물인터넷 환경은 경량 디바이스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능이 기존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들보다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및 보관 단계에서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입력 값에 noise를 추가하여 공격자가 데이터를 가져갈지라도 데이터 판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보호기술이 있다. 이때 출력 단계에서도 noise를 추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데이터 통계정보에도 noise를 추가하여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형마이닝 기법을 통해 가공, 활용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다[24].

개인정보 수집을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시민으로부터 받는 동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제점도 개선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도 개인정보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25].

3. Informational ethic approach

프라이버시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혼자 있을 권

리(the right to be left alone). 1890년 하버드 법대 편집지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인정받고 있는 개념인데 “합당치 않는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자유(the right to be free of unreasonable personal intrusions)”를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호 교감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가 모든 것에 우선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는 규범이 존재치 않고 혼란으로 뒤덮일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절대적인 규제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26].

우리나라 관료들은 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윤리관의 결핍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국가도 그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행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부조리와 국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정보윤리의 확립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27].

V. Conclusions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주체 또는 정보이용자의 개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정보이용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조지나 동의의무를 포괄적이고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고지한다든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정보수집의 이용 제공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본다[28].

수사기관의 통신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사가 충분히 논증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의 논증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신 수사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성의 원칙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적합성원칙과 필요성원칙, 균형성원칙을 충족시켜 범죄통제를 위한 통신수사는 비례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통신수사의 방법이 피의자의 프라이버시의 희생단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필요성원칙을 통해 덜 침해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통신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피의자 등이 연관되어 다양한 원칙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과 더불어 “완충지대(Pufferzone)”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9]. 또한 통신수사 등과 관련 수사사건처리규칙과 절차 등을 교육함으로써 절차민주주의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와의 균형점과 완충 점을 모색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Hwa Sa Pub. pp343-344,2013.
- [2] Lot's security issue and suggestion,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1700ho,2015.
- [3] Lot's security issue and suggestion,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1700ho, p34,2015.
- [4] Shim, Woo Min, Legislature improvements and Lot private protection. National Assembly 1135ho,2016.
- [5] Shim, Woo Min, Legislature improvements and Lot private protection. National Assembly 1135ho,2016.
- [6] Lee, Won Sang, "Information Investigation for equilibrium of privacy and crime control," Prime Prosecutors Office, pp71-83,2015.
- [7]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 Hwa Sa Pub. p377,2013.
- [8]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 Hwa Sa Pub. pp343-382,2013.
- [9]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 Hwa Sa Pub. pp343-382,2013.
- [10] Lee, Won Sang, Information Investigation for equilibrium of privacy and crime control, Prime Prosecutors Office, pp71-83,2015.
- [11] Robert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p75,1994,
- [12] Lee, Won Sang, "Information Investigation for equilibrium of privacy and crime control,"Prime Prosecutors Office, pp71-83,2015. Court of the constitution, Decision ,92hun 8.21,91992.
- [13]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 Hwa Sa Pub. pp343-382,2013.
- [14] Lee, Won Sang, "Information Investigation for equilibrium of privacy and crime control," Prime Prosecutors Office, p79,2015.
- [15] Weekley Repor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stitute of infomation promotion,112hop,2015.
- [16] Internet &Security Biweekly,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te information,2014.
- [17] JoMinJi, "access right deprivation of peoples information data without legal system", information center for transparent society,2016.
- [18] Kim, Yoo Seung, "response of Public Administration Sue due to non open by the investigation agency",information center for transparent society, 2016.
- [19] U. S court admitted whil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by us government, The promotion for information industry, pp36-37,2013.
- [20]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Hwa Sa Pub. p376,2013.
- [21] Shim, Woo Min, "Legislature improvements and Lot private protection,"National Assembly 424ho, pp14-21,2015.
- [22] Kim, Ho Won, "Lot's security and privacy issues,"Institute for regiona information and developmentl,7ho, pp1-7, 2015.
- [23] Kim, Ho Won, "Lot's security and privacy issues,"Institute for regions information and developmentl,7ho, pp11-15, 2015.
- [24] Kim, Ho Won, "Lot's security and privacy issues,"Institute for region information and developmentl,7ho, pp11-15, 2015
- [25] Mass media Report for private information gathers consent paper, Mogaha,2015
- [26] Chang, Kook Heon, Consumers attitude change to the private information gathers: change of private information quantity and quality,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issertation, p6,2006.2,
- [27] Kim, Taek, "A study on Direction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Focused on Freedom of Information",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0, Oct. 2015.
- [28] Kim, Hyung Soo, Developing improvements relate to private information, Ministry of creature and future, pp88-93,2014.
- [29] Lee, Won Sang, "Information Investigation for equilibrium of privacy and crime control," Prime Prosecutors Office,2015.

Authors



TaeK Kim received the B.S., M.P.A. and Ph.D. degre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Criminology from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and DongGuk University, Korea, in 1986, 1991,1997 and 2016,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Jung Won University, Chung Buk, Korea, in 2011.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Jung 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Information Culture, and internet Criminals